

개인관련 세법변경, 비즈니스관련 세법변경, 기타 Cares Acts 규정

지난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(COVID-19)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안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.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 자금 유통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내용이 있을 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. 지금 많은분들이 PPP Loan 에만 집중하시는데, 다른 많은 혜택이있으니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어려운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개인 관련 세법 변경

- 개인에 현금 지급 (INDIVIDUAL STIMULUS PAYMENTS)
- 대상: 이민법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 납세자
- 2019 세금보고 기준으로 하나 2019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을 시 2018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함
-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를 기준으로 함
-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(DEPENDENT OF OTHERS)로 세금보고가 된 경우는 제외됨
- ADJUSTED GROSS INCOME 기준
- 개인 \$75,000, 부부 공동 \$150,000 텍스 보고자 : 납세자 개인별 \$1,200 , 부부 합산 \$2,400 + 자녀 한명 당 \$500
- ADJUSTED GROSS INCOME 기준 개인 \$75,000, 부부 공동 \$150,000 이상 텍스 보고자 : AGI \$100당 \$5씩 차감되며 개인 \$99,000 부부공동 \$198,000 이상 보고자는 해당 사항 없음 지급 시기는 4월초 ~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급 방법은 세금보고 시 요청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나 수표 발행

비즈니스 관련 세법 변경

1.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 (PAYCHECK PROTECTION LOAN)

- 대상: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, 자영업자, 비영리 법인 - SBA SECTION 7
- 적용 기간 (COVERED PERIOD) : 2/15/2020 ~ 6/30/2020
-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으며 연방 정부가 전액 보증함(\$150,000 이상은 12/30/2020 이후 85%만 보증)
- 대출 가능 금액: \$10M이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과거 1년간 PAYROLL COSTS 월 평균액의 2.5배와 1/31/2020 이후 재난 대출 (DISASTER LOAN) 받은 금액의 합계
 - PAYROLL COST에는 정상급여, 보너스, 커미션, 독립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, 유급 휴가, 퇴직급여, 직장 단체 건강보험, 은퇴 연금, 급여에서 공제된 주세 및 지방세가 포함되며 연봉 \$100,000 이상 고액 급여자, 주 거주지가 외국인 종업원 급여, 급여 관련 세금(PAYROLL TAXES)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급 병가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음
- 대출 기간 및 이자: 최장 10년, 연리 최고 4%: 2년을선택하시면 0.5%
- 사용 용도: 급여, 모기지이자, 임대료, 전기료 등 사업 관련 부채 상환.
-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- 추후 대출원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사업체는 대출 자금(급여 비용, 모기지 이자, 유틸리티 등)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, SBA 의 심사후 추가 문서를 요구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SBA 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 대출금의 사용에 하자가 발견되면, 관련내용이 조사되어 불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. 탕감된 대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
2.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금 상환 면제 (LOAN FORGIVENESS OF PROTECTION LOANS)

- 급여 보호를 위한 대출금을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며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됩니다
- 대출일로부터 8주(EIGHT WEEKS) 동안 지급된 급여 비용(PAYROLL COSTS), MORTGAGE 이자,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일부 제세공과금(CERTAIN UTILITY PAYMENTS)이 해당되며 기준이 되는 8주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은 평균 직원수와 10만 불 미만 종업원 급여를 년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시 25% 이상 감소한 금액은 혜택에서 제외되기로하였습니다.

3. 긴급 정부 재난 대출 및 지원금(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AND GRANT)

- 대상: 종업원 500명 이하 기업, 자영업자, 비영리법인(ESOPS)에 해당-SBA-7(B)(2)
- \$200,000 미만 대출에 관하여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기로하였습니다.
- 1/31/2020 이후 급여 보호 대출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.

4. 대출 원리금 정부 보조(SUBSIDY FOR CERTAIN LOAN PAYMENTS)

- 종업원 급여보고 대출 이외 SBA 7(A) 대출금에 관하여 SBA 중소기업청이 6개월간 원리금(원금과 이자)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항이 만들어져있습니다.
- SBA 7(A) 대출금은 \$350,000 이하 SMALL LOAN으로 현재 SBA에서 긴급 처방에 나선 \$25,000까지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게됩니다.

5. 종업원 유지 보조금(EMPLOYEE RETENTION CREDIT)

코로나 바이러스 (COVID-19)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한 고용주는 급여세에대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.

- 대상: 2020년 중 정부의 지시로 영업을 일부 혹은 전부 중단한 고용주와 2019년 같은 분기(QUARTER)와 비교하여 총수입이 50% 이상 감소한 고용주
- 대상자로 지원이 되었다라도 매 분기 선별하여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수입이 80% 넘을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.
- 보조금액은 종업원 개인별 급여(QUALIFIED WAGES)의 50%와 단체 의료보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최고 직원 당 \$10,000을 넘지 못합니다.
- 별도의 보조 규정이 있는 유급 병가 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며 보조금 합계가 PAYROLL TAXES를 초과하는 경우는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고용세와 자영업세 납부 연기(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 AND SELF EMPLOYMENT TAX)

- 2020년 발생한 고용주나 자영업자 부담 분 사회보장세 6.2%는 12/31/2021과 12/31/2022년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CARES ACTS 규정

1. 100%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 수정(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FIX)

- 2017년 세법변경(TAX CUTS AND JOBS ACTS :TCJA)에서 누락되었던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(QIP)에 대한 수정이 포함되어 2018년과 2019년 QIP에 대해 100% 보너스 감가상각을 못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함.

2. 은퇴 연금 인출 가능(SPECIAL RULES FOR USING RETIREMENT FUNDS FOR CORONAVIRUS COSTS)

- 59.5세 미만 납세자가 은퇴 연금을 인출하였을 시 부과되던 10% 벌금에 대한 조건부 면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나 가족이 감염된 경우,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로 인해 실직 혹은 격리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\$100,000까지 가능
- 10% 벌금은 조건부 면제되지만 과세는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(다만 3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)

3. 기부금 공제 규정 변경(CHANGES TO CHARITABLE CONTRIBUTIONS)

- 기본 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혜택 받지 못했던 기부금이 납세자의 선택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- 세법상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에 연간 총액 \$300 이상 기부금 해당됩니다.
- 2020년 기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이 철폐되어 현금기부의 경우 개인의 경우 AGI 60%에서 100%로, 기업의 경우 AGI의 10%에서 25%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4. 학자금 대출 상환(EXCLUSION FROM INCOME OF EMPLOYER PAYMENT OF EMPLOYEE STUDENT LOAN DEETS)

- 고용주는 종업원의 학자금 원리금 최고 \$5,250(2020 기준)까지 종업원을 대신하여 상환해줄수 있습니다.
-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도 채무면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거나 종업원은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은 할 수 없습니다고용주가 대신 상환해준 원리금은 현행법상 종업원 업무관련 교육지원비와 합산하여 \$5,2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5. 이월결손금 관련 규정 변경(CHANGES TO THE NET OPERATING LOSS RULES)

- 2017 TCJA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NOL CARRYBACK 규정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2018,2019,2020 결손 금액은 이전 년도 최장 5년간 CARRYBACK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나간 년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정보고를 통하여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2019년과 2020년으로 넘어오는 NOL은 LIMITATION 80%가 아니라 100%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6. 이자 제한 규정 변경(CHANGES TO THE INTEREST LIMITATION RULES)

- 2017 TCJA IRC SECTION 163(J) 규정에 의한 AGI 30% LIMITATION이 2019년과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AGI LIMIT을 50%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- 다만 2020년 전체적으로 과세소득이 떨어질 경우 2020 LIMITATION 계산 시 2019년 AGI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